

울산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4나4323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4나432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가단2839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 선고 2015. 11. 4.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가단2839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2013. 9. 26.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6일 월 948,6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부당이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①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 적법하게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 것을 알았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절차의 정지 내지 취소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체비지 매수대금은 67,662,100원으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매수대금 380,000,000원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④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145,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제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체비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철거와 이 사건 체비지의 인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정우철

판사김승현

별지